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2025. 11. 21.

사회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경과

의안 제654호로 2025년 11월 7일 우경란 의원 외 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 여가활동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모범경로당을 선정·확대함으로써 경로당 기능을 혁신하고 건강한
노후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경로당 운영 평가 및 모범 경로당 선정 근거 신설(안 제12조)
-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맞춤법을 정비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입법예고(2025. 11. 7.~2025. 11. 13.)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개정 배경 및 취지

- 의학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노인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문제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음.
- 특히 은퇴 이후 사회적 활동이 줄고 신체활동이 감소할 경우 근력 저하와 고립감으로 인한 건강 악화 및 정서적 위축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일상 속에서 노인들이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과 여건 마련이 중요함.
- 경로당은 지역사회 내 대표적인 노인 여가·복지시설로서, 단순한 여가 공간을 넘어 신체활동 촉진, 사회적 유대 강화, 정서적 안정 등 다기능 복지공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운영 평가 및 모범경로당 선정·표창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여 노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12조(경로당 운영 평가 및 모범경로당 선정)는 신설 조항으로, 구청장이 연 1회 경로당 운영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모범경로당을 선정·표창할 수 있도록 함.

□ 검토결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방안을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경로당 운영평가와 모범경로당 표창 근거를 신설함.
 - 이를 통해 경로당이 단순한 휴식공간을 넘어 신체·정서·사회적 기능을 지원하는 지역복지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궁극적으로 노인들의 여가활동 활성화 및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자료

1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삭제

②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

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